

대 구 고 등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7나24466 추심금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 경북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, 송진희
피고, 피항소인	C 주식회사 대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배진권
제 1 심 판 결	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. 9. 21. 선고 2017가합50847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2. 28.
판 결 선 고	2018. 4. 11.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73,519,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2. 27.부터 2018. 4. 1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4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73,519,8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. 2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,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아래와 같이 '가압류할 채권의 표시'를 하여 E을 채무자, 피고를 제3채무자로 'E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 한다) 중 420,578,42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'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, 2014. 2. 18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83호로 인용결정(이하 '이 사건 가압류결정'이라 한다)을 받았으며, 위 가

압류결정은 2014. 2. 21.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가압류할 채권의 표시

청구금액: 금 420,578,425원정

채무자: E(F)

주민등록번호: 000000-1000000

사업자등록번호: 503-00-00000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

나. 원고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(반소 2014가합1585)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1. 15. 'E은 원고에게 600,608,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6. 1.부터 2016. 2. 5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.

다.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E을 채무자,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'이 사건 채권 중 420,578,425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, 나머지 286,415,936원은 압류한다.'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6. 3. 18.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184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(이하 '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'이라 한다)을 하였으며, 위 결정은 2016. 3. 23.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라.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(반소 2014가합1585) 판결에 대하여

E이 항소하였는데, 항소심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8. 2. 9. 'E은 원고에게 369,383,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6. 1.부터 2018. 2. 9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(2016나876(본소), 2016나883(반소))하였고, E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. 3. 1. 확정되었다.

마. E의 배우자인 G은 2014. 5. 19. 사업자등록번호를 '503-00-00000', 상호를 'H'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7.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, 피고로부터 2016. 11.경까지 위 자동차부품 대금 합계 1,494,438,825원을 지급받았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, 2, 6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

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4. 5. 27.경부터 G 명의의 H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2016. 11.경까지 약 15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. 그런데 위 H는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E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배우자인 G을 내세워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E 명의의 F과 동일한 업체이며, 피고는 E이 H를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E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,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변제로서 가압류권자 및

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당시에는 E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. 한편,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명시된 '가압류할 채권의 표시'에는 'E(F, 사업자등록번호: 503-00-00000)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'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고,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E이 운영하는 F이 아니라 G이 운영하는 H(사업자등록번호: 503-00-00000)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G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.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범위에 따라 G과 E을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H의 G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.

3. 판단

가. G 명의의 H의 실질적 운영자가 E인지 여부에 관하여

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,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,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,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E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,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G의 명의를 빌려 F과 별개의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. 11.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1) ① G은 남편인 E과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함께 F을 운영하다가 2011년 경부터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하여 F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E이 전적으로 F의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증언한 점, ② G이 H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4. 5. 19.인 점, ③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 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, G은 2014. 3. 1.부터 같은 해 11. 1.까지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하였고, 2016. 11. 2.부터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, 자신의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G이 사업자등록 시점을 전후로 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때 G은 2014. 5.경 이후로도 H의 경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G은 H의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.

2) ① H의 'DPI'는 F(D000 P0000 I0000000)의 영문 약자로 보이며, E의 명함(F의 대표)에도 DPI로 표시되어 있는 점, ② H는 2014. 5. 27. 피고에게 첫 납품을 하였고 그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생산설비가 필요할 것인데, H의 2014. 1. 1.부터 2014. 6. 30.까지의 매입거래내역을 보면 J에 25,797,273원¹⁾과 대구은행에 4,000원이 전부인바, H의 생산설비는 F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H와 F이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은 동일한 제품인 점, ④ F에 근무하면서 제품생산을 담당하던 K 차장이 H에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비록 H와 F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위 두 업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인다.

3) 피고는 제1심에서 2016. 10. 13.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「2014. 4.경 E이 피고 회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인 G의 명의로 된 'H' 업체와 물품거래를 해달라는 요청

1)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용으로 보인다.

을 하였고, 피고 회사는 당시 베어링부품 등을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다면 업체 명의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위 E의 요청에 따라 H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」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, 2014. 5.경부터 시작된 H와 피고 사이의 거래 관계도 E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.

나. 피고가 H와의 거래를 E과의 거래로 인식하였는지 여부

1)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4. 2.경까지 E으로부터 계속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받아 왔고,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H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G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E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,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H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E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, ③ 피고가 H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 등은 F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, ④ H와 피고의 첫 거래는 2014. 5. 27.이고 같은 달 31.까지 4일간 납품받은 부품의 대금은 5,435만 원으로서 그 후 7개월간(2014. 6. ~ 12.)의 월평균 납품분에 대한 대금이 약 5,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볼 때, 피고는 H와의 거래내역장부(갑 제6호증, 을 제2호증)에 기재되지 않은 F과의 2014. 5. 26.까지의 거래내역을 2014. 5. 28.자 45,018,520원의 자동차부품(LMF20UU-S 1920개 외) 납품건에 집중시켜 기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(위 거래내역장부를 살펴보면, 피고와 H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6. 11.경까지 하루에 4,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품을 납품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)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2014. 5. 이후에도 F 또는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온 것이라고 보인다.

다.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피고와 H의 거래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

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'가압류할 채권의 표시'에는 'E(F, 사업자등록번호: 503-00-00000)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'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, 피고는 2015. 5. 27. 이후 G이 사업자등록을 한 H(사업자등록번호: 503-00-00000)와 물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스스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. 따라서 '가압류할 채권의 표시'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,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,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).

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H는 E이 형식적으로만 G을 사업자로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F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고, 피고로서도 H와의 거래의 실질당사자가 G이 아닌 E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다가,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'E'이고, '가압류할 채권의 표시'란의 채무자로는 'E(F, 사업자등록번호: 503-00-00000)'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, 이 사건 채권의 표시는 'E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'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'E'를 특정하기 위하

여 부기한 것으로 반드시 'F'만이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피고의 H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.

라.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

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. 2. 10. F에 기존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,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그러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바(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),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, E은 1998년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매월 일정한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물품거래관계를 맺어 왔고, 그러한 거래관계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3개월간 중단되었으나(E은 위 3개월 동안 삼우정밀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우회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), 2014. 5. 27.부터 동일한 형태의 거래관계가 재개되어 2016. 11.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, 위 가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물품대금(반환)채권은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으로서도 위 계약상 월 단위로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까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라는 데 대하여 특별한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그러므로 이 사

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한 피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까지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.

한편,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, 이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,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와의 계속적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인 2014. 5. 27.부터 2016. 11.까지 약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고, 피고는 E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,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원고에게 그 추심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 발생한 E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 473,519,867원(대구고등법원 2016나876(본소), 2016나883(반소) 사건의 판결원금 369,383,953원과 이에 대한 2013. 6. 1.부터 2018. 2. 9.²⁾까지의 지연손해금 104,135,914원}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. 2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2. 27.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원고는 2018. 2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쪽 각주 1)에서 '2013. 6. 1.부터 2018. 2. 19.까지 총 1,715일간의 이자로 기재하였으나, '2018. 2. 19.'은 '2018. 2. 9.'의 오키로 보인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,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흥구

 판사 송민화

 판사 황형주